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64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허종식 · 윤준병 · 유동수
한민수 · 김동아 · 안호영
이광희 · 맹성규 · 정준호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절차를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의 해산
2. 정당의 합당
3. 정당의 당명 변경
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당적변경 신고서 및 당적변경 사유서를 지방의회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탈당 일시
2. 탈당 사유

3. 주민에게 설명하는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을 우선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대표직 등의 취임 제한) ① 제44조의2에 따른 정치적 책임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

1. 지방의회의 의장
2. 지방의회의 부의장
3. 상임위원회 위원장
4. 특별위원회 위원장

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제한은 의원의 자격이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탈당의 경위
2.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에 미친 영향
3. 주민에게 제공한 설명의 충실성
4.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4조의2(당적 변경의 신고 및 공개) 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정치적 책임 절차를 따른다.</u>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정당의 해산</u> <u>2. 정당의 합당</u> <u>3. 정당의 당명 변경</u> <u>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u> <u>③ 제1항에 해당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당적변경 신고서 및 당적변경 사유서를 지방의회 의장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신 설>

1. 탈당 일시

2. 탈당 사유

3. 주민에게 설명하는 내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및 사유서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회부된 사항을 우선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의3(대표직 등의 취임 제한) ① 제44조의2에 따른 정치적 책임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임기 동안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 ② (생략) <u><신설></u>	<u>1. 지방의회의 의장</u> <u>2. 지방의회의 부의장</u> <u>3. 상임위원회 위원장</u> <u>4. 특별위원회 위원장</u> <u>② 제1항에 따른 취임 제한은</u> <u>의원의 자격이나 의정활동을 제</u> <u>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u>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44조의</u> <u>2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u> <u>여부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u> <u>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u> <u>여야 한다.</u> <u>1. 탈당의 경위</u> <u>2.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에 미</u> <u>친 영향</u> <u>3. 주민에게 제공한 설명의 충</u> <u>실성</u> <u>4.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신뢰성</u> <u>에 미치는 영향</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	--